

경운대학교 인터내셔널센터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인터내셔널센터(이하 “인터내셔널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인터내셔널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- ① 연구 및 교육에 관한 국제학술교류 업무
- ② 학생 해외교류 및 유학에 관한 업무
- ③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
- ④ 외국 학술 연구자 및 인사 초청
- ⑤ 해외 홍보 업무
- ⑥ 외국인 잉글리쉬 빌리지(English Village) 입소 학생의 선발 및 입학업무 전반
- ⑦ 한국어연수과정 입학 외국인 유학생의 선발 및 국내체류에 관한 제반 업무
- ⑧ 외국대학과의 자매결연
- ⑨ 재학생 및 지역민들의 외국어 교육 및 연수
- ⑩ 외국인 및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 및 교재개발
- ⑪ 공공기관 및 기업, 기타 단체의 외국어 위탁교육
- ⑫ 외국어능력시험 유치 및 평가
- ⑬ 국제인증 관련 업무
- ⑭ 기타 국제교류 관련 업무

제2장 조 직

제3조 (구성) ① 인터내셔널센터에는 센터장 및 관련업무 담당 직원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경운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직원은 경운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 (직무) ① 센터장은 인터내셔널센터를 대표하며, 인터내셔널센터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.

② 직원은 센터장을 보좌하고, 인터내셔널센터 운영 및 행정에 관한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5조 (운영위원회 설치) 인터내셔널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

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업무를 심의·자문한다.

- ① 사업의 성과분석
- ② 연차별 사업계획
- ③ 운영규정의 개·폐 및 기타 중요사항

제7조 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위원은 경운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업무 특성상 해외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지정하여 자문을 구한다.
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인터내셔널센터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8조 (위원회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,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9조 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.

제10조 (심의 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- ② 소속 외국인 교원의 임명 추천에 관한 사항
- ③ 소속 외국어 시간강사 선임에 관한 사항
- ④ 연구원 및 조교의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
- ⑤ 인터내셔널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⑥ 인터내셔널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⑦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협정에 관한 사항
- ⑧ 기타 인터내셔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3장 어학 교육과정

제11조 (어학강좌 운영) ① 센터장은 인터내셔널센터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비정규 어학강좌를 개설, 운영 할 수 있다.

- ② 개설강좌, 수강료, 강사료 등 어학강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.
- ③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어학강좌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④ 어학강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은 개강 이후 1주일 이내로 한다.

⑤ 유료강좌의 경우 참가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 납부한 수강료는 과오납 또는 폐강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센터장의 승인 하에 환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환불기한은 개강 후 1주 이내로 한다.

제12조 (어학강좌개설 및 수강료 징수) ① 어학강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터내셔널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 필요 시 기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기획, 운영할 수 있으며 강좌 운영에 필요한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.

제13조 (어학강좌 지원자격) 인터내셔널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. 단, 한국어전일제과정 및 특수 어학과정에 대하여는 학력·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4조 (어학강좌 선발방법) 수강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육과정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5조 (어학강좌 교육비) ① 유료강좌의 경우, 수강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교육비의 반환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 중 수업료 등의 반환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용한다.

제16조 (어학강좌 수료증 수여) ①수료자격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체수업 시간의 80% 이상을 출석과 규정된 과정을 필한 자로 한다.

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17조 (어학강좌 재정) ①인터내셔널센터의 모든 수입금은 교비회계 세입예산으로 한다.

② 인터내셔널센터의 운영재원은 전항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경운대학교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제4장 외국어

제18조 (외국어 졸업인증) 아래 요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

① 토익(인터내셔널센터 모의토익 포함)

가. 항공운항학과 : 600점 이상

나. 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, 치위생학과, 군사학과 : 500점 이상

다. 가·나목 외의 학과 : 400점 이상

② 토플, JPT, HSK 등 공인된 외국어 성적으로 제출할 경우 졸업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항의 기준에 준한 성적점수를 대체 인정 할 수 있다.

③ ①항②항의 인증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본 대학교가 인정하는 비교과 어학강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수하면 외국어인증을 부여한다.

- 가. 기준점수 1점 ~ 100점 부족 : 1개과정 이상 이수
- 나. 기준점수 101점 ~ 150점 부족 : 2개과정 이상 이수
- 다. 기준점수 151점 이상 부족 : 2개과정 이상 이수 + 토익(인터내셔널센터 모의토익 포함)시험 1회 이상 응시

제5장 보 칙

제19조 (운영세칙)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인터내셔널센터운영회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제20조 (어학연수학생 관리지침) 어학연수학생의 수업 및 학적관리를 위해 어학연수생 관리지침을 둘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